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4. 29 선고 2021가단2924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4. 22.

판 결 선 고 2022. 4. 29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. 9. 23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가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. 9. 23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7,272,7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7,272,72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, ① 별지 목록 1 번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3. 23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, ② 같은 목록 2 번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3. 23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7,272,7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,272,72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용

별지

1) 이 사건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‘56,253,072원’의 한도 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‘17,272,727원’의 한도 내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행한다.